



2014년 5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(02-509-7230), 임완빈 연구관(02-509-7233)

## 불법·불량계량기 근절을 위한 법안 국회 통과

- 불법·불량계량기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 구현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: 성시헌)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,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4월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주유기, 전력량계 등과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나,
  -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작은 솜방이식 처벌로 인해 위법행위가 재발하는데다,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.
    - \* “주유기 프로그램 조작으로 80억대 부당이득”(14.3.12) 등 계량기 조작사례[참고 2]
  -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,
    -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.
- 또한,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 및 동네의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**포상금을 지급**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한편, 현행 법률은 **길이(두루마리 화장지 등), 질량(쌀, 과자류 등), 부피(음료수, 주류 등)**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하였으나,

○ 물티슈, 기저귀 및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간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

○ 금번 개정안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**개수,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** 등으로 확대하였다.

\* 정량표시상품: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

\* 정량표시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[참고 3]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('15.1월 예정)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하여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,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.

\* 하위법령 마련 :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(2건 개정, 9건 제정)

< 참고. 1 > :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
< 참고. 2 > : 계량기 조작 사례

< 참고. 3 > : 정량표시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와 임완빈 연구관(☎ 02-509-72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입법추진 배경

- 급속한 기술발전, 관리대상 계량기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계량기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
  -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등 계량기의 자율적 관리를 확대하고, 리콜제도·소비자감시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장감독을 강화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- 효율적·실효적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
  - 제조사 등이 제조결함 사실을 의무 신고토록 하고, 결함내용에 따라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22조)
  - 제작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 계량기를 검정·정기검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관리 확대(제32조~제33조)
  - 불법계량기의 감시·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감시원제도 운영(제54조)
-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대상 품목 조정 및 처벌기준 강화
  - 정량표시상품(現 26종)을 미용화장지, 벽지 등 개수,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활밀착형제품 포함(제2조제3호)
  - 상거래 및 증명용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을 통해 측정오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(제39조~제40조)
  - 부정 계량행위의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(2억원 이하)하고, 위반자 명단 공개 규정 신설(제51조, 제55조)
- 계량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
  - 계량분야의 창업지원, 인력양성, 해외진출 지원 등 계량산업의 육성(제57조~제60조)
  - 검사이력 관리, 검사대상 통보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제61조~제62조)

연도	계량기별 조작사례		출처
2013년	수도 미터	사용자의 계량기 밸브 조작으로 인한 요금 과다 청구	조선일보 외 4건
		수도계량기 설치 기준 위반(역설치) 하여 사용량 기준 조작 및 요금 조작	연합뉴스
	주유기	주유기의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양 조절	연합뉴스 외 1건
2012년	가스 미터	가스미터 봉인 파손 후 계량기 조작	노컷뉴스 외 2건
	주유기	주유기의 전자기판 조작을 통한 양 조절	YTN 외 2건
		주유기의 메인보드 조작을 통한 양 조절	YTN 외 5건
		주유기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양 조절	SBS
	전력 량계	전력량계 측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바늘을 넣어 원판 회전을 막음	KSB
	적산 열량계	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조작방지를 위한 관련 설치 기준 개정	MBC 외 4건
2011년	수도 미터	목욕탕 등 상수도 계량기 조작	YTN
	주유기	리모컨 조작을 통한 주유 양 조절	SBS
	적산 열량계	계량기 건전지 불법 제거하여 계량 조작(신도시 아파트 100세대 발견)	국회 국정감사
2010년	수도 미터	수도미터 검침 바늘 조작을 양 조절	서울경제 외 1건
		수도미터 기어 파손을 통한 요금 감면 효과	YTN 외 3건
	전력 량계	전자식전력량계 외함에 구멍을 뚫고 전류측정소자 훼손	부산일보

**참고3**

**‘정량 부족’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**

(단위: 건)

구분	품목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합계
물품	식료품&기호품	140	184	132	124	580
	식생활기기	1	2	2	3	8
	주방용품·설비	1	2	1	1	5
	가구	3	0	2	0	5
	가사용품	13	14	15	6	48
	광열.수도	117	93	72	47	329
	의류,섬유, 신변용품	47	55	49	49	200
	보건.위생용품	23	29	28	17	97
	차량 및 승용물	74	73	73	78	298
	문화용품	4	0	2	1	7
	정보통신기기	5	3	4	3	15
	스포츠.레저.취미용품	1	2	1	3	7
	토지.건물 및 설비	18	16	16	8	58
	농.수.축산용품	3	3	3	6	15
	기계류 기타물품	9	3	6	4	22
합계	소 계	459	479	406	350	1,694

※ 소비자보호원 상담 사례('10~'13년)